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10월 2일
-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5일
- 라. 상정일자: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저변 확대와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 책무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 드론산업 육성 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안 제6조)
- 공공부문 활용 촉진 (안 제7조)
- 드론산업 지원 (안 제8조)
-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 (안 제9조~제10조)
- 자문단 운영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 차원의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의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타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 상위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드론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바, 안 제5조에서도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공동 추진 및 민간 위탁의 근거와,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가능 규정을 명시화함.
- 또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교육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문단 운영의 근거를 수립하였음.

○ 검토 결과

- 최근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물류, 환경, 관광, 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부터 드론 우수 기술 조기 사용화를 촉진하고자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K-드론배송 서비스, 국제드론레저스포츠 행사 개최, 첨단 드론행정 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등 주민 밀착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우리 구(區)는 드론 전문 교육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드론 자격증 및 정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구내 행사,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에 드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청소 작업의 효율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구

청사 외벽 청소를 추진하기도 하였음.

- 2020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바, 우리 구(區)에서도 이에 발맞춰 드론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
- 또한 2022년 6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신설된 바, 지역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3
----------	-----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김지연·이규선·전승관·우경란
이성수·정선희 의원 (6인)

1. 제안이유

영등포구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저변 확대와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책무 (안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 다. 드론산업 육성 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안 제6조)
- 라. 공공부문 활용 촉진 (안 제7조)
- 마. 드론산업 지원 (안 제8조)
- 바.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 (안 제9조~제10조)
- 사. 자문단 운영 (안 제11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

4.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5. 드론 관련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6.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
7.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사생활 보호
8. 드론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산업 육성 추진 및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 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재·재난 대응, 구조·구호 활동
2. 건설현장의 공정·안전·품질 관리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공원·하천 등 자연환경 관리
5.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시료 채취 및 분석

6. 지역축제 · 관광자원 홍보 영상 제작
7. 육상 · 수상 · 수중의 측량, 탐사 및 물류수송
8. 문화재 및 지역 유 · 무형 자산의 보존과 홍보
9. 교통흐름 분석, 대규모 행사 · 집회 시 군중 안전관리와 실종자 수색 등 치안 업무 지원
10. 주민참여형 드론 교육 · 체험 및 경진대회 개최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산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과 기업 간 상생문화 구축 및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